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56

발의연월일: 2021. 3. 17.

발 의 자:민형배·이용빈·양향자

이병훈・윤미향・송갑석

주철현 • 윤영덕 • 김민철

조오섭 · 이정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됩니다. 반면 5·18민주유공자 와 그 유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. 이들도 다른 유공자 들과 동등하게 지원해야 합니다.

기존 사단법인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회, 5·18민주유공자유족회, 5·18구속부상자회 회원 중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유공자의 형제자매 등 일부가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없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
5·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하나, 타 국가유공자와 보상체계가 다릅니다. 이에 생활조정수당이 아닌 생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하고자 합니다. 종전 각 사단법인 회원은이 법에 따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. 사각지대에

놓인 이들을 포함시켜 예우를 합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법률 제17883호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9조의2 및 부칙 제6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883호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단서 중 "교육지원과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"을 "교육지원,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"으로 한다.

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9조의2(생계지원금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 - 1. 5 · 18민주유공자
 - 2. 5·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 순위자 1명
 -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경우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보상금"은 "생계지원금"으로 본다.
 -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·조사·질문 등 수급권 확인·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과 금융정보제공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

촉진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생활조정수당"은 "생계지원금"으로 본다.

-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권리의 보호와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조금을"을 "보조금,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등을"을 "및 생계지원 금 등을"로 한다.

제95조의2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

부칙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의2(회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에 따른 구법인 해산 당시의 구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.
 - 1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: 사단법인 5·18민주화운동부상 자회와 사단법인 5·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 중 제4조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

- 2. 5·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: 사단법인 5·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: 사단법인 5·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
- 3. 5·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: 사단법인 5·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 중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했 개 아 법률 제17883호 5 · 18민주유공자 법률 제17883호 5 ·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(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제9조(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) ① ----권리의 발생 및 소멸)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 다. 다만, 제12조의3제1항에 따 른 교육지원과 제84조의2제2항 ----교육지원, 제84조의2제2항 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 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및 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 지급을 신청하는-----을 권리가 발생한다.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89조의2(생계지원금) ① 다음 <신 설>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 1. 5 · 18민주유공자

2. 5 · 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

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

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경우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 이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 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보상 금"은 "생계지원금"으로 본다.

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· 조사·질문 등 수급권 확인· 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과 금융정보제공 및 생계 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 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생활조정수 당"은 "생계지원금"으로 본다.

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권리의 보호와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 및 그

제92조(학습보조비 등의 환수) ① 지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(제16조 및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),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·직업능력개발훈련비,제31조에 따른능력개발 장려금·지원비,제34조에 따른의료지원비,제48조에 따른의료지원비,제48조에 따른보조금,제84조의2에따른요양지원에 관한보조금을 환수하여야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제95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

밖에 시급에 필요한 사양은 내
통령령으로 정한다.
세92조(학습보조비 등의 환수) ①
<u>보조금,</u>
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
1. ~ 3. (현행과 같음)
2
<u>및 생계지원금 등을</u>
③ (현행과 같음)
세95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

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, 재외국민등록사항, 군복무에 관한 자료, 국세·지방세에 관한 자료, 소득·재산에 관한 자료,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각종연금·보험에 관한 자료,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~ 10. (생 략) <신 설>

11. ~ 13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부 칙

<신 설>

①	
1. ~ 10. (현행과 같음)	
10의2. 제89조의2에 따른 생	계
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	<u>발</u>
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	<u>한</u>
<u>조사</u>	
11. ~ 13. (현행과 같음)	
② ~ ④ (현행과 같음)	
부 칙	
]6조의2(회원에 관한 경과조치	([.
이 법에 따른 구법인 해산	당
시의 구법인의 회원으로서	다
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	은
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	하-

고 이 법에 의한 회원의 자격 을 가진 것으로 본다.

- 1. 5 ·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: 사단법인 5 · 18민주화 운동부상자회와 사단법인 5 · 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 중 제 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2. 5 · 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원: 사단법인 5 · 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
- 3. 5 · 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: 사단법인 5 · 18구속부 상자회의 회원 중 제4조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